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수립 등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33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목적규정에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화 혜택 공유 추가 .....      | 3  |
| 2.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시책 수립 .....    | 4  |
| 3.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 공론화 및 연구 촉진 .....    | 9  |
| 4. 지능정보사회원의 위탁대상에 공론화 및 연구 촉진 업무 추가 ..... | 14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안 제1조).
- 나.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6장제1절).
- 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 Ⅲ. 검토의견

#### 1. 목적규정에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화 혜택 공유 추가

- 목적규정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1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br>----- <u>확보하며 그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등</u> -----. |

#### □ 검토사항

- 현행법 제1조는<sup>1)</sup>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②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③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것을 목적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임.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로의 지향점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이 법은 일반법으로서 관련 법규나 「디지털포용법」(2026.1.22. 시행) 등이 정하는 개념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개정내용이 목적규정에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시책 수립

-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하고(안 제6장제1절),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이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이라 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 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1절 <u>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u><br><u>&lt;신설&gt;</u> | 제1절 <u>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u><br><br>제44조의2( <u>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의 기준 수립 등</u> ) ① 정부는 <u>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이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이라</u> |

| 현행 | 개정안                                                                                                                           |
|----|-------------------------------------------------------------------------------------------------------------------------------|
|    | <p><u>한다)하는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

#### □ 검토사항

- 현행법 제6장제1절은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을 위해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 우리 사회는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삶의 전(全)영역에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지능정보화 심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 디지털 심화시대(지능정보화 심화) 정의 >

| 진화 단계         | 디지털화(보조)<br>(Digitalization) | 디지털전환(보완)<br>(Digital TX)    | 디지털심화(공존)<br>(Digital Sophistication) |
|---------------|------------------------------|------------------------------|---------------------------------------|
| 업무방식<br>(사무직)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br>'DB화, 정보검색'  |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는<br>'클라우드, 화상회의' |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br>'챗GPT(생성 AI)'          |
| 이동방식<br>(자동차) | 빠르고 정확한 이동을 위한<br>'네비게이션'    | 안전·편의 향상을 위한<br>'주행 보조 시스템'  |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br>'완전 자율주행'              |
| 생산방식<br>(농업)  | 반복된 작업의 효율을 위한<br>'자동화 농기계'  |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br>'스마트팜'   | 스스로 수확하고 관리하는<br>'AI(로봇) 농부'          |

주: 디지털이 인간을 돕는 디지털화(보조) →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디지털전환(보완)  
→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심화(공존) 단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정부는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디  
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기준  
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공동번영사  
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  
지털 권리장전”이라 함)(2023. 9.)을 수립하였음.
-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추구할 모범적인 미래상(디지  
털 공동번영사회)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 및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

1. **자유와 권리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
  - 디지털 접근 보장, 표현의 자유와 책임, 디지털 근로·휴식·대체수단 요구 등
2.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
  -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자산의 보호, 지털 리터러시 향상, 데이터 접근 보장 등
3.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기술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절차를 마련
  -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사용, 디지털 위험 대응, 프라이버시 보호, 건전한 환경 조성 등
4. **디지털 혁신 촉진:**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며,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장려
  -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지속적인 혁신의 지원, 규제 개선, 디지털 갈등 조정
5.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연대, 디지털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 후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2024년 5월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8대 핵심 과제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권리장전 및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제6장제1절의 제목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처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관련 조문이 신설되더라도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등이 여전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목 개정이 충분히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6장제1절은 제44조부터 제56조까지이고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음.

|                                                                                                                                                                                                                                                                                                                                                                                                                                                                                                                            |
|----------------------------------------------------------------------------------------------------------------------------------------------------------------------------------------------------------------------------------------------------------------------------------------------------------------------------------------------------------------------------------------------------------------------------------------------------------------------------------------------------------------------------|
| <p><b>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b></p> <p><b>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b></p> <p>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p> <p>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p> <p>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p> <p>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p> <p>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p> <p>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p> <p>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p> <p>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p> <p>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p> <p>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p> <p>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p> <p>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p> <p>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p> |
|----------------------------------------------------------------------------------------------------------------------------------------------------------------------------------------------------------------------------------------------------------------------------------------------------------------------------------------------------------------------------------------------------------------------------------------------------------------------------------------------------------------------------|

### 3.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 공론화 및 연구 촉진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과정에서의 협의·조정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함(안 제44조의3).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44조의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을 지원하며, 자문회의를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음(안 제44조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44조의3(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③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4(공론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심의, 토론 등 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론화의 범위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5(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p> |

| 현행 | 개정안                                                                                                                                                                                                                                                              |
|----|------------------------------------------------------------------------------------------------------------------------------------------------------------------------------------------------------------------------------------------------------------------|
|    | <p>하기 위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촉진 및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검토사항

- 개정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

동변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공동변영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능정보사회 심화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은 개정안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 지능정보사회 심화시대에는 기존의 규범 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방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시대의 새로운 기준 수립, 부처 협업을 위한 협의회 구성, 국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론화,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촉진까지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 제44조의3의 협의회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sup>2)</sup>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법안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안 제44조의3)’는 현행법 제6조에<sup>3)</sup>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44조의3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지능정보사회위원의 위탁대상에 공론화 및 연구 촉진 업무 추가

- 지능정보사회위원의<sup>4)</sup> 위탁대상 업무에 공론화 지원,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함(안 제 69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br>(생략)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br>(현행과 같음)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br>다음 각 호의 <u>권한</u> 을 대통령령<br>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br>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br>----- <u>업무를</u>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4. 제44조의4에 따른 공론화 지<br>원                             |
| <u>&lt;신설&gt;</u>                                                                 | 5. 제44조의5에 따른 연구 및 민<br>간 활동의 촉진 지원                  |
| 4. (생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 <u>&lt;신설&gt;</u>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업무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이 법에서 지능정보사회위원으로 약칭함,

## □ 검토사항

- 현행법 제69조제2항에<sup>5)</sup>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공론화(안 제44조의4) 및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안 제44조의5)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의 위탁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보여짐.
-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위탁과 달리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sup>6)</sup> 점 및 현행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위탁의 형식 등 절차적인 사항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69조제2항제7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탁의 허용범위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해 보임.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729.

|              |
|--------------|
| 문 의 처        |
| 02)6788-5228 |